유연근무제 운영지침

- 제정 2014. 8. 29.
- 개정 2017. 7. 3.
- 개정 2017. 7.31.
- 개정 2018. 2.28.
- 개정 2018. 4. 25.
- 개정 2018. 12. 28.
- 개정 2019. 11. 1.
- 개정 2020. 12. 29.
- 개정 2021. 12. 14.
- 개정 2022. 12. 23.
- 개정 2023. 7. 19.
- 개정 2023. 12. 28.
- 개정 2024. 2. 1.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.) 취업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연근무제도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3, 12, 28.>
- 제2조(정의) 유연근무제라 함은 통상의 근무시간, 근무일, 근무지를 변경, 선택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말하며, 세부 근무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시간선택제근무제는 주당 근무시간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.<개 정 2023.7.19.>
 - 2.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되, 출퇴근시간·근무시간·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.
 - 3. 원격근무제는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(스마트 워크센터 등 출입시간 확인이 가능한 장소)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.<개정 2017.07.03.>
 - 4. 임신 중 단축 근무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근무시간을 1일당 2시간을 단축하여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.<신설 2017.07.03., 개정 2021. 12. 14.>
 - 5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1일당 1시간 에서 최대 2시간을 단축하여 주당 근무시간 35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.<신설 2019.11.1.><개정 2023.7.19.>
 - 6. 임신 중 탄력근무제는 임신 중인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·종료시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.<신설 2021. 12. 14.>
- 제3조(적용범위) 유연근무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, 근로계약, 그 밖에 진흥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.
- 제4조(대상자) ① 유연근무제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(단, 탄력근무제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

- 상)인 직원 중 유연근무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, 대상자에 대한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4. 2. 1.>
- 1. 시간선택제근무자와 임산부 및 육아기 단축 근무자는 탄력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신청할 수 없다.<개정 2019.11.1>
- 2. 원격근무자는 탄력근무제 근무 및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할 수 없다.<개정 2017.07.03.>
- 3. 청년인턴, 파견근로자는 시간선택근무제 및 원격근무제를 신청할 수 없다.<개정 2017.07.03.>
- 4. 공무직은 시간선택제, 탄력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신청할 수 없다. 단, [별표 제1호] 근무시간 변경 불가 직무를 제외하고는 탄력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다.<신설 2018.12.28., 개정 2020.12.29., 21. 12. 14.>
- ② 시간선택제근무 대상자로는 시간선택제근무자로 신규 채용된 직원을 포함한다.
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격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22.12.23.>
- 1.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
- 2. 결재·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,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적어 조직운영의 독립성이 높은 업무
- 3.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격근무제를 신청할 수 없다.<신설 2022.12.23.>
- 1. 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- 2. 안전점검, 장비점검, 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
- 3. 민원 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업무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
- 제5조(신청·승인·변경·취소)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유연근무 시작일 전주까지(월요일부터 금요일)[별지 제1호] 유연근무제 근무(전환) 신청/변경/취소를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,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1.1., 2020.12.29., 2021. 12. 14., 2022.12.23., 2023. 12. 28.>
 - ②<삭제 2021. 12. 14.>
 -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, 임신 중인 직원의 유연근무제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 <신설 2021. 12. 14.>
 - 1. 직원은 제2조 제4호의 임신 중 단축근무를 당월에 신청할 수 있다.
 - 2. 직원은 제2조 제6호의 임신 중 탄력근무제를 시작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
 - 3. 직원이 취업규칙에 따라 자동육아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
 - ④ 시간선택제근무제 신청·변경은 [별지 제6호]에 따른 "시간선택제근무제(변경) 신청서"를 3개월 단위로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후,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23.7.19.>
- 제5조의2(근로계약) 진흥원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직원을 신규채용하거나 근무유형 변경이 있을 때에는 [별지 제3호]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며 1부는 직원에게 교부한다.<개정 2023.7.19.>
- 제6조(근로기간) ① 유연근무 근로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. 단, 임신 중 단축근무제는 근

- 로기준법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19.11.1.. 2022.12.23.>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간선택제근무자로 채용된 직원의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다.
- ③ <삭제 2022.12.23.>
- **제7조(근무유형)** ① 유연근무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근무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시간선택제근무
 - 2. 탄력근무제
 - 3. 워격근무제
 - 4. 임산부 단축 근무제<신설 2017.7.3.>
 - 5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<신설 2021. 12. 14.>
 - 6. 임신 중 탄력근무제<신설 2021. 12. 14.>
 - ② 제1항의 유연근무제 근무유형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21. 12. 14., 2023.7.19.>
 -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연근무제 실시범위는 1주 단위로 실시하며, 당해 연도로 제한한다. 단, 임산부 단축 근무제는 제2조 제4호의 기간으로 정하여 실시하며, 시간선택제근무제는 제5조 제4항의 기간으로 정하여 실시한다.<개정 2017.7.3., 2023.7.19., 2023. 12. 28.>
- **제8조(초과근무)** ① 시간선택제근무자, 원격근무자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원칙적으로 지양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취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의 동의하에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, 1주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 하에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.
 - ④ 임신 중 단축 근무자는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 등 초과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.<신설 2017.07.03., 개정 2021. 12. 14.>
- **제9조(재직기간의 산정)** ① 진흥원 재직기간 중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100% 산입한다.
 - ② 진흥원 재직기간 중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이 총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(주 40시간)에 비례하여 산정한다.
 - ③ 탄력근무자, 원격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은 진흥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④ 임산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기간은 재직기간에 100% 산입한다.<신설 2017.07.03., 개정 2019.11.1.>
- 제10조(휴가의 종류) ①유연근무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·공가·병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 - ② 유연근무자의 공가·병가·특별휴가의 부여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1조(연차유급휴가) ① 유연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진흥원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, 시 간선택제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.

- ② 주 5일 반일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. 단, 해당 연차유급휴가 1일은 전일근무자의 반일에 해당된다.
- ③ 주 3일(주 3일 입사자) 전일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, 반일연차유급휴가 2회는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.<개정 2023. 12. 28.>
- **제12조(급여 등)** ①시간선택제근무자의 급여 및 수당 등은 진흥원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일제근 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
 - ② 탄력근무자, 원격근무자의 급여 및 수당은 진흥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13조(성과관리)** 유연근무자의 성과관리는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되, 시간선택제근무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4조(근무중단 및 변경) 유연근무의 중단이나 근무시간, 근무지, 근무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유연근무 시작일 1주 전에[별지 제2호] 유연근무제 중단(변경) 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12. 28.>
- 제15조(근무취소) 유연근무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, 소속 부서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유연근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23.>
 - 1. 복무·근태 불량
 - 2. 업무성과 저조
 - 3. 파견, 휴직 및 징계사유 등 발생
 - 4. 원격근무자의 경우, 보안서약/행동강령 위반
 - 5. 그 외 유연근무 유지가 불가하다고 소속 팀장이 판단하는 경우
- 제16조(원격근무자의 보안관리) ① 원격근무자는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2.23.>
 - 1. 가상사설망(VPN)을 활용한 업무시스템 사용
 - 2. CMOS·로그온·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
 - 3.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
 - 4. 출처,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
 - 5.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
 - 6. 해킹의심 메일 열람 금지 등
 - ②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시작 전에 보안담당 부서에 보안업무규칙 [별지 제27호]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업무와 관련된 중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·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3.>
 - ③ <삭제 2022.12.23.>
- 제17조(원격근무자의 복무관리 등) ① 원격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해당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<개정 2017.07.03.>
 - 1. 이메일, 메신저, 전화 등을 통해 회사 내 관리자 또는 동료와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
 - 2. 그룹웨어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각을 이용한 근태관리 및 일일업무보고

- 3.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한 원격근무자의 근무상황 확인 등
- ② 원격근무자는 업무수행 중,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다.
- ③ 원격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 ·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속 팀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한다.
- ④원격근무제 신청자는 [별지 4호]의 양식으로 주요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방안 및 성과 계획 등 근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원격근무일의 일일업무를 [별지5호]의 양식으로 직상위자에게 매일 보고 하여야 한다.<신설 2017.07.03.>
- ⑤원격근무제 중 스마트워크 근무형 신청자(원 스마트워크센터 외)는 유연근무 신청 시, 근무상대 확인가능 증빙자료(스마트워크 근무지 예약확인서 등)를 제출하고, 신청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신청월의 출퇴근기록(스마트워크 근무지 이용현황 포함)을 소속 부서장 및 근태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7.07.03.><개정 2022.12.23.>
- **제18조(통상근무로의 복귀)** ①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한 직원은 근무기간이 경과한 후,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하여야 한다.
 - ②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한 직원은 근무기간 중이라도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시, 당사자, 소속 부서, 인사담당 부서와의 합의를 통해 전일제 근로자로 조기 복귀할 수 있다.
- 제19조(공통사항) ① 소속부서장은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직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며 근태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다.<신설 2022.12.23.>
 - ② 유연근무자는 해당 근무일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·퇴근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. 단, 원격근무제 중 스마트워크 근무형 신청자(원 스마트워크센터 외)의 경우 제17조제5항에 따라 출퇴근기록을 보고 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12.23.>

부 칙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되며, 이 지침의 시행에 따라 단시간 근로제 운영지침, 탄력근무제운영지침은 본 지침에 통합된다.

부 칙(2017.07.03.)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, 탄력근무제 ⑥F형은 '18.06.31.까지 한시 적으로 운영한다. <삭제 2018. 2. 28.>

부 칙(2017.07.31.)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, [별표 제1호]의 탄력근무제 F, G형은 '18.06.30.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 <삭제 2018. 2. 28.>

부 칙(2018.02.28.)

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04.25.)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12.28.)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1.1.)

이 지침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12.29.)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12.14.)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제6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22. 12. 23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7. 19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12. 28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4. 2. 1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1호] 근무시간 변경 불가 직무 <개정 2021. 12. 14.>

| 구분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민원 | 교대제, 주말전담에 한함 |
| 미화 | _ |
| 시설관리 | 교대제에 한함 |
| 청원경찰 | _ |

[별표 제2호] <개정 2017.07.03., 2017.07.31., 2018.02.28., 2018.04.25., 2019.11.1., 2021. 12. 14> <삭제 2023.7.19.>

<u><삭 제></u>

[별지 제1호] <개정 2017.07.03., 2017.07.31., 2018.02.28., 2018.04.25., 2019.11.1., 2021. 12. 14., 2022. 12. 23., 2023.7.19.>

유연근무제 근무(전환) 신청서

| 결 | 신청자 | 팀 장 | 단 장 | 본부장 | 원 장 |
|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| | | |
| 재 | | | | | |

| □ 소 | 속 : | | | | | |
|------|------|-----|----|----|---|--|
| □ 사 | 번 : | | | | | |
| □ 성 | 명 : | | | | | |
| □ 실시 | 기간 : | 00년 | ○월 | ○일 | ~ | |
| □ 신청 | 사유 : | | | | | |

| 근무형태 | 근무일 및 근무시간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□ 육아기 단축 근무제 | □ 육아기 단축 근무 (30시간) | □ 00:00~00:00 | | | |
| | □ 육아기 단축 근무 (35시간) | □ 00:00~00:00 | | | |
| □ 임신 중 단축근무제 | □ 주 5일 전일(30시간) | □ 00:00~00:00 | | | |
| □ 임신 중 탄력근무제 | □ 주 5일 전일(40시간) | □ 00:00~00:00 | | | |
| □ 탄력근무제 | [시차출퇴근형] | | | | |
| | □ 주 1일 | | | | |
| □ 원격근무제 | □ 재택근무형 □ 스마트워크 근무형 | · □월□화□수□목□금 ※ 스마트워크 근무지 : 장소() | | | |
| | □ 주 2일 | | | | |
| | □ 재택근무형 □ 스마트워크 근무형 | · □ 월 □ 화 □ 수 □ 목 □ 금 ※ 스마트워크 근무지 : 장소() | | | |

- ※ 휴가및급여·수당등가타복구및보수에관하시험은 근로기준법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른다.
- ※ 원격근무제 신청자는 "원격근무 근무계획서", "보안서약서" 첨부 필수
- ※ 원격근무제 신청자 중 스마트워크 근무형(원 스마트워크센터 외)은 제17조제5항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 필수

[별지 제2호] <개정 2017.07.03., 2017.07.31., 2018.02.28., 2018.04.25., 2019.11.1., 2021. 12. 14., 2022. 12. 23., 2023.7.00.>

유연근무제 중단(변경) 신청서

팀 장

단 장

신청자

| □ 소 속 : □ 사 번 : □ 성 명 : □ 실시기간 : ○○년 ○월 ○일 ~ ○○년 ○월 ○일 □ 중단(변경)사유 : | | 재 | | | |
|---|--|---------|--------|------|--|
| | □ 사 번 :□ 성 명 :□ 실시기간 : ○○년 | ○월 ○일 ~ | OO년 O월 | 월 ○일 | |

| 근무형태 | 근무일 및 근무시간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□ 육아기 단축 | □ 육아기 단축 근무 (30시간) | □ 00:00~00:00 | | |
| 근무제 | □ 육아기 단축 근무 (35시간) | □ 00:00~00:00 | | |
| □ 임신 중 단축근무제 | □ 주 5일 전일(30시간) | □ 00:00~00:00 | | |
| □ 임신 중 탄력근무제 | □ 주 5일 전일(40시간) | □ 00:00~00:00 | | |
| | [시차출퇴근형] □ ○○:○○~○○:○○ | | | |
| □ 탄력근무제 | [근무시간선택제] | | | |
| | □ 주 1일 | □ 월 □ 화 □ 수 □ 목 □ 금 | | |
| □ 원격근무제 | □ 재택근무형 □ 스마트워크 근무형 | □ 월 □ 와 □ 구 □ 축 □ 금 ※ 스마트워크 근무지 : 장소() | | |
| | □ 주 2일 | □ 월 □ 화 □ 수 □ 목 □ 금 | | |
| | □ 재택근무형 □ 스마트워크 근무형 | · □ 월 □ 화 □ 수 □ 목 □ 금 ※ 스마트워크 근무지 : 장소() | | |

- ※ 휴가및급여·수당등가타복구및보수에관하시하는 근로기준법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른다.
- ※ 원격근무제 신청자는 "원격근무 근무계획서", "보안서약서" 첨부 필수
- _※ 원격근무제 신청자 중 스마트워크 근무형(원 스마트워크센터 외)은 제17조제5항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 필수

근 로 계 약 서

(신규 채용)

|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(이하 "갑"이라 한다.)과(이하 "을"이라 한다.)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 |
|---|
| 제1조(근무부서 및 담당직무) "을"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"갑"이 정한다. |
| 제2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,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. |
| 제3조(근무기간 및 휴게) 1일의 근무시간은 ○시간으로 하되, 휴게시간(12:00~13:00)을 제외하고 ○○:00부터 ○○:00까지로 한다. |
| 제4조(근무일 및 휴일) 1주일간의 근무일은 주 ○일(○요일, ○요일, ○요일 / ○요일, ○요일 오전 또는 오후)이고,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. |
| 제5조(휴가)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른다. |
| 제6조(급여) "을"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, 매월 20일(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)에 "을"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. |
| 제7조("을"의 임무) "을"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,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2. 진흥원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 |
| 제8조(계약해지) 계약직직원관리규칙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"갑"은 "을"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|
| 제9조(기타)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른다. |
| 년 월 일 |
|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(갑) (인) 성 명(을): (인) 주민등록번호: 주 소: |

원격근무제 근무 계획서

□ 근무자 :

| 주요 업무명 |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 | 성과 계획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
원격근무형 일일업무보고

□ 근무자 : 홍길동 □ 근무일 : OO월 OO일(O요일)

| 시간 | 수행 내용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09:00 - 10:00 | ■ 주요 수행업무 내용 - ※ |
| 10:00 - 11:00 | |
| 11:00 – 12:00 | |
| 12:00 - 13:00 | 휴게시간 |
| 13:00 - 14:00 | |
| 14:00 – 15:00 | |
| 15:00 – 16:00 | |
| 16:00 – 17:00 | |
| 17:00 – 18:00 | |

시간선택제 근무제(변경) 신청서

| 결 | 신청자 | 팀 장 | 단 장 | 본부장 | 원 장 |
|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| □ 사□ 성 | 명 : 간 : | 00년 (| ○월 ○일 ~ ○○년 ○월 (|) 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주요업무 (사무분장업 · | 무) | | | |
| | | | | |
| | | 구분 | 현행 | 변경 |
| | 근무시간 | | ㅇㅇ시간 | ○ ○시간 |
| | 신청기간 | | ○월 ○○일~○월 ○○일 | ○월 ○○일~○월 ○○일 |

신청(변경) 사항

| [건경기원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근무형태 [주5일 반일 (20시간)] | □ 00:00~00:00 | □ oo:oo~oo:oo |
| 근무형태 [주5일 전일 (30시간)] | □ 00:00~00:00 | □ 00:00~00:00 |
| 근무형태 [주5일 전일 (35시간)] | □ 00:00~00:00 | □ 00:00~00:00 |

** 휴가 및 급여 \cdot 수당 등 기타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른다.

| 접 | 담 당 |
|---|-----|
| 수 | |